

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(재)지정하고,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30일

강 원 도 지 사

- 다 음 -

1. 지정기간 : 2018년 4월 6일 ~ 2023년 4월 5일 (5년 지정)
2. 대상지역 : 강릉시, 평창군, 정선군 일부 / 3,937필, 7.13km²
 - 강릉시(1,979필 / 2.87km²) : 초당동·강문동·송정동·견소동·운정동·저동·안현동, 강동면 정동진리, 옥계면 금진리 일부
 - 평창군(1,517필 / 1.43km²) : 봉평면 창동리·원길리, 대관령면 차항리·횡계리 일부
 - 정선군(441필 / 2.83km²) : 정선읍 회동리, 북평면 나전리·숙암리 일부

3.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대 상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180m ² 초과시
	상업지역	200m ² 초과시
	공업지역	660m ² 초과시
	녹지지역	100m ² 초과시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	90m ² 초과시
도시지역외의 지역	농 지	500m ² 초과시
	임 야	1,000m ² 초과시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² 초과시

※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

4.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 및 지번별조서

- 위치도면 : 「붙임」 강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면
- 토지조서 : 「붙임」 강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 조서

※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 작성된 것으로 최근 토지이동(분할, 합병, 등록사항 정정 등)사항 미반영으로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을 기준으로 함.

5. 열람 및 문의

- 강원도청 토 지 과 : 033-249-3466
- 강원도청 특구개발 : 033-249-3934
- 강릉시청 지 적 과 : 033-640-5099
-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: 033-330-2522
-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: 033-560-2263

6. 기타사항

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청 토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